

제11조 (체험학습)

-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②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,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.
-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, 연 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10일 이내로 한다.
- ④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 견학, 답사,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,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 경계'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'가정학습'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, 필요시 반일(4시간)도 사용할 수 있다. (4 시간 2회시 1일로 환산)
- ⑥ (체험학습 운영절차)
 - 가.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.
 - 나. 교환학습(개인, 단체)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→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→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→ 교환학습 실시→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→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.
 - 다. 교외체험학습은 학생·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(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 경계' 단계의 경우 전일, 토/일 및 공휴일 제외)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,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. 단,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.
 -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
 - 라.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,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.
- ⑦ (교외체험학습 형태) 가족동반여행, 친인척 방문, 답사·견학활동,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'심각, 경계'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.
- ⑧ (체험학습 불허 사항)
 - 가.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
 - 나. 사설학원,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
 - 다.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
 - 라.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
 - 마.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
 - 바.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- ⑨ (미인정 결석 처리)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.
 - 가.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
 - 나. 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
 - 다.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
 - 라.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
 - 마.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
- ⑩ 위에 언급되지 않은 체험학습관련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준하여 처리한다.